

제43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7월27일(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6)
4.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6)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6)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9)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9)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3)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6)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1)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3)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0)
1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1)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3)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9)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8)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3)
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1)
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0)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2)
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8)

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1)
2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9)
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1)
2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0)
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2)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6)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5)
2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5)
30.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7)
3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6)
3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3)
3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0)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8)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7)
3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1)
3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1)
3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7)
3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2)
4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5)
4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6)
4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3)
4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7)
44.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4)
4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8)
4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9)
4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9)
4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0)
4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6)

5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6)

5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0)

5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6)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7
o 간사(박형수) 인사	8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8
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6)	9
4.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6)	9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6)	9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9)	9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9)	9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3)	9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6)	9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1)	9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3)	9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0)	9
1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1)	9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3)	9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9)	9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8)	9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3)	9
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1)	10
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0)	10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2)	10
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8)	10
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1)	10
2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9)	10
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1)	10

2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0)	10
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2)	10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6)	10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5)	10
2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5)	10
30.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7)	10
3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6)	10
3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3)	10
3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0)	10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8)	10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7)	10
3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1)	10
3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1)	10
3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7)	10
3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2)	10
4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5)	10
4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6)	11
4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3)	11
4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7)	11
44.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4)	11
4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8)	11
4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9)	11
4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9)	11
4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0)	11
4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6)	11
5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6)	11
5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0)	11
5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6)	11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에 새로 선임되신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을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처음 출석하신 만큼 간단히 위원님들의 인사를 듣고 또 오셨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또 비교섭단체에서도 간단히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법사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같이 얼굴을 뵈던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전에처럼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법사위가 좀 됐으면 합니다. 원래 법사위 위상을 참 법사위원들께서 스스로 세워 주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법사위가 전쟁터, 정쟁의 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로 서영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위해서 법사위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환영합니다.

다음은 광규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택 위원 저도 합니까?

○위원장 서영교 예.

○광규택 위원 지난 22대 국회 상반기 2년 동안에 참 정청래 위원장님, 추미애 위원장님, 서영교 위원장님한테 하도 시달려 가지고 제가 법사위에 다시 오는 것을 정말 싫었습니다. 싫었는데 법사위가 정말 이제는 악법 자판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국민들 여론 다 무시하고 정파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방 통과시키는 이런 악법 자판기가 돼 간다 하는 우려 때문에 그나마 자판기가 아니라 그냥 제조기 정도에서 제가 머물게 하려고 다시 법사위로 왔습니다.

한번 잘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환영하는 인사말을 요청했는데 인사말부터 독하군요.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6·3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된 울산 남구갑의 김태규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정해지는 것과 관련해서 다들 예측을 법사위 아니면 과방위로 이렇게 예측을 하시길래 어차피 거기 갈 것 같아서 제가 상임위 희망원에는 그 두 곳은 뺐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 예측에 맞게 법사위로 왔네요. 피하지 못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법사위 처음 온 것은 제 경험으로는 법원에 근무할 때 참고 증인으로 와서 저기 증언석에 서서 한번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증언석에 서서 답할 때는 제 말 한마디가 좀 더 대한민국의 법치, 대한민국의 법 원칙이 제대로 서는 것을 희망하면서 그리고 먼 훗날에는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로 그렇게 증언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 한 칠팔 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더 후퇴한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의 원칙은 더 무너진 것은 아닌가 그리고 국가 시스템은 더 망가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윤상현 위원** 윤상현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정입니다만 여러 위기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민주공화정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헌법과 법률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세우고 지키는데 일조하고자 법사위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아시다시피 법사위는 국민의 치안과 삶에 직결되는 법안이 많습니다. 지난 상반기에서 사실은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민들이 쟁점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통과되는 법안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토의가 이루어지는 법사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환영의 말씀으로 김승원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승원 위원** 우선 서영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드디어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법사위가 이렇게 짝 차게 된 것을 저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오늘 전체회의가 네 번째고 법안1소위는 8번째 개최가 되는데 그동안 밀린 숙제들

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잘 속기록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을 위한 좋은 의정활동 부탁드립니다.

또 예전에는 윤석열 때는, 그게 불과 2년 전인데 시행령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려고 했던 그런 법치주의의 위기가 있었는데 법사위에서만은 같이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또 삶을 잘 지키는 법안들을 신속하게 잘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혹시 또 환영의 인사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교섭단체에서 혹시 하시겠습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제……

○박형수 위원 별로 환영 안 하는 모양이네.

○김용민 위원 빨리 간사 선임해 드리고 싶어서……

○곽규택 위원 박지원 위원님은 한번 해 주셔야지.

○위원장 서영교 박지원 대표님, 한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지원 위원 곽규택 위원만 안 왔으면 참 좋은데……

○위원장 서영교 마이크 넣어 드리십시오. 그래도 한말씀……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저 안 해요.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오늘 국민을 위해 법사위가 이제 서로 함께 출범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법안을 심사하고 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는 법사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이 있었는데요. 법안2소위·예산결산기금소위·청원소위를 구성하면서 소위원장도 선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협의가 완전하지 않아 이 안건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국민의힘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후반기 우리 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한 후 50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0건의 고유 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22분)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을 협의할 간사를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박형수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간사(박형수) 인사

○위원장 서영교 간사로 선임되신 박형수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박형수 간사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박형수 위원입니다.

우리 당의 나경원 의원이 1년 동안 간사 호소인으로 지내다가 법사위에서 나가셨는데 제가 호소인이 아닌 간사로 선임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참 쓸쓸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간사로 정식으로 선임을 해 주셨으니까, 간사 선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 협의할 때 또 모든 일정을 정할 때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과 함께 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사위가 어떤 특정한 계층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법사위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간사님께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간사님께서도 전화 여러 번 하셨고 또 저도 했고, 그래서 더 서로 소통을 잘 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님,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님과 충분히 협의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두 간사님께서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기 당부드리며 두 간사님들께서는 오늘 상정하지 못한 소위 구성의 건에 대하여 신속히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미상정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25분)

○위원장 서영교 오늘 의사일정에는 고유법안 중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이 15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또한 숙려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 법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해야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처음부터……

○**곽규택 위원** 숙려기간의 취지를 지켜야지요.

○**위원장 서영교** 선관위 특검법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곽규택 위원** 아직 여야 합의가 안 됐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여야에서 우선 올려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합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표결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어도 표결의 절차는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합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표결은 국회법 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합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첫날부터 곽규택 위원이 여야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정까지는 합의되었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표결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록에 남겨 두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유법안 상정입니다.

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6)

4.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6)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6)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9)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9)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3)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6)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1)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3)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0)

1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1)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3)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9)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8)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3)
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1)
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0)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2)
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8)
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1)
2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9)
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1)
2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0)
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2)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6)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5)
2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5)
30.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7)
3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6)
3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3)
3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0)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8)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7)
3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1)
3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1)
3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7)
3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2)

4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5)
4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6)
4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3)
4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7)
44.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4)
4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8)
4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9)
4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9)
4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0)
4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6)
5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6)
5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0)
5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6)

(10시28분)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3항부터 52항까지인데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2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제3항에서 52항까지 5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구두로 제안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손술 의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법안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경찰·검사의 협력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상에 피해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인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라는 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자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정기적으로 피해자와 고소인, 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 상황과 처분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서 피해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끝내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의 반론권을 보장하자는 것인데요.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건이 왜 불송치되었는지나 이의제기를 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반론을 실질적

으로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이유를 상세히 밝히거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등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셋째로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검사에 대한 면담을 신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넷째로 피해자의 신변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새로운 구속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는 추가 범죄 피해 우려가 매우 큼니다. 참담하고 안타까운 소식을 언론에서 뒤늦게 접할 것이 아니라 예방 조치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보복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독립적인 사유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피해자 참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도 피해자, 피해자 지원 단체의 중요한 요구 사항이기도 했는데요. 살인·상해·성폭력·강도 등 중대범죄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검찰개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많은 분들이 우려와 불안을 보내고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엄중한 질문을 생각하면서 답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속에서도 범죄 피해자 권리가 강화되어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에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손술 의원님의 법안의 취지를 잘 담아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내용을 그동안 형사소송법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법안에도 아주 많이 잘 녹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형사소송법 안에 넣어 놓았다는 말씀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그리고 또 정의로운 사법 정의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 피해자의 권리가 잘 녹여 들어가서 제도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그 밖의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법률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본을 보시면 되겠고요. 검토보고서 원문들은 노트북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항부터 제11항까지 9건의 주요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난민제도가 제도적 취지와 달리 국내 체류 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난민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난민인정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이 인정된 적격결정자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고 난민 신청자가 난민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한 후에 재입국 허가 없이 임의로 출국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신청을 취하한 것의 내용이 있으며 난민위원회 위원 수 및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적격심사제도가 난민 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 법무행정을 수사·기소 중심의 검찰사무와 분리하여 법률 전문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법무행정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법무행정관 신설을 통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위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기존 공무원 제도와와의 정합성 및 인사 운영의 효율성, 다른 민간경력직 특별채용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 의사일정 제9항 이진태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피의자가 도주하였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발부하도록 하고 영장실질심사 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심문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서 준비 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토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과 수사·재판 지연 우려 등과 같은 실무상 애로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제10항·제11항 박은정 의원, 손술 의원, 김승원 의원 각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리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 상해, 성폭력, 강도 등 중대범죄 피해자 측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피해자 소송참가제도를 신설하면서 증거신청,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등사 신청,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및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제도개선으로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검사 면담 및 의견진술권, 수사 지연 등에 대한 이의제기권,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피해자 측에 대한 수사 상황 통지 의무의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 소송참가제도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이 검사와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당사자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증거신청권, 증인·피고인 신문권 등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나라 형사소송 구조와 조화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진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 법률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의사일정 제12항에서 19항까지 8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유형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정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근로자를 추가하는 한편 이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전체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회사법은 회사의 업무 집행 및 대표 행위, 주식·채권의 양도와 같은 단체법·거래법적 규율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 등 성적 영상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에서 포섭하지 못하던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성적 영상물을 규율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가상의 인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전제로 하는 성폭력처벌법의 규율체계와 정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 관리에 관한 조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법률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토킹범죄의 정의 중 반복성에 6개월 내에 스토킹행위가 재차 행하여진 경우라는 표현을 부기하고 보복 스토킹범죄를 신설하는 것으로 정의규정 변경이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른 보복 범죄와의 형평성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기도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2항까지 법률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2항까지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교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회생법원을 신규 설치하려는 것으로 인천지방법원의 도산 사건 수, 도산 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내 도산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도산 사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배치 설계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민사 항소사건, 지식재산 민사가처분 항고사건 등을 특허법원의 관할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특허법원의 전문적 사법 자원을 활용하여 판결의 일관성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특허법원이 대전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그 외 지역 당사자의 경우 항소심을 위하여 지역 관할 항소심 관할법원이 아닌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적용 대상 범죄에 가정폭력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가정폭력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행위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용 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주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현행법에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검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 여부와 부착 기간을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와 범죄인의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보건에 관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를 그 형식상의 지위·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보도록 하고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보다 강하게 구축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수범자에게 과도한 처분에 해당되지는 않은지와 동일한 취지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32항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 4건의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수사대상으로 상기한 공통 사항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김은혜 의원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기관의 관리 소홀, 책임 회피 문제 및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등을, 백혜련 의원안은 본투표용 투표용지의 인쇄 물량 산정 및 그 기준의 개정·시행 등 투표 준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는 범죄혐의 사건 등을, 유상범 의원안은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발생하였음에도 개표를 강행하였다는 의혹 사건, 투표함이 불법 반출·이송되었다는 의혹 사건 및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투표용지가 보관·전달·이송되거나 타 지역 투표지가 발견된 의혹 사건 등을, 한병도 의원안은 전북교육감선거 등 전국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로 인한 유권자 투표 누락 사태,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및 채용비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비리 사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직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김은혜 의원안 및 백혜련 의원안은 각각 특별검사보 4인, 파견검사 20인, 특별수사관 40인, 파견공무원 40인인데 반해 유상범 의원안은 특별검사보 5인, 파견검사 15인, 특별수사관 100인, 파견공무원 130인으로, 한병도 의원안은 특별검사보 5인, 파견검사 30인, 특별수사관 50인, 파견공무원 70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백혜련 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60일로 최대 총 140일인 반면 김은혜 의원안, 유상범 의원안 및 한병도 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로 최대 총 170일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52항까지 법률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세진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되게 두껍던데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세진 예.

○위원장 서영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내용을 잘 만드셨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진 의사일정 제33항부터 52항까지 2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관이 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법원서기관부터 법원주사보까지에서 법원부이사관부터 법원주사보까지로 확대하고,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사무 처리는 가족관계등록관도 처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국민 등록사무 처리를 위한 가족관계등록관제도 및 무인증명서발급기 운영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 중 가족관계등록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직급을 법원부이사관까지 확대한 부분은 사법보좌관의 경우 난이도가 높은 법률적 업무에 있어 전문성 있는 처리를 위해 법원이사관까지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법원 전체 인원 중 법원부이사관 비중을 고려하고, 법원부이사관의 경우 현재 각급 법원 사무국장 또는 사법보좌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으로 보할 수 있는 직급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재외국민 등록사무 처리업무 수행을 위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근무하게 하거나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원심판결에 대한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등의 경우 소송수행자가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민형사상 및 징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소송수행자가 책임 회피 목적으로 상소를 기계적으로 제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상소로 인한 행정력과 지연손해금의 낭비를 차단하고 소송 상대방인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상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송수행자가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행법은 소송수행자 등이 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상소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로 불변기간에 해당하여 그 기간 내에는 반드시 항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불변기간 내에 심의위원회 소집과 회의 및 의결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검토하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그 전에 김민전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운영위랑 일정이 같이 겹쳐서 좀 늦게 오신 것 같은데 환영하며,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전입니다.

제가 법은 전혀 모릅니다마는 시민의 상식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환영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나오셨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체토론은 희망하는 위원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셨고요. 김승원·김남희·박지원·박은정 위원님 그리고 주진우·윤상현·김민전·곽규택·박형수 위원님 이렇게 희망하셨습니다.

우선 희망한 위원님들 중심으로 순서대로 대체토론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박지원 위원님 제일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 그리고 국회 출입기자들의 관심사도 정성호 장관이 사표를 냈느냐 반려하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사위를 보이콧하던 국민의힘 위원들도 들어오셨어요. 그만큼 정성호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관심이 큰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거듭 강조를 했는데 장관께서 국회로 들어오시면서, 즉 법사위로 들어오시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한 걸 보니까 일단 안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 산업계의 생태계를 바꿔서 1400억, 이건 도대체 감이 안 오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예산의 2년분의 세일즈를 하고 브라질로 가셨는데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법무부장관이 사표를 내서 관심을 자기한테 끌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성공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제 10월 3일 중수청, 공소청을 설립하는데 이걸 마무리해야지 사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하고 저도 좀 나쁜 말을 했는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대통령이 외국 나가 계시고 그래서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딱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법사위로 들어오셨더라고요. 박지원 기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국민이 질문하는 거예요.

장관께서는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대통령께 직접 사의 표명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외유 중에 계십니다. 국민들이 아는 대로 많은 외국 빅테크 기업들과 다양한 합의를 해 갖고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언론에 저의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도 상당히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법무부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 문제였고 또 법무부장관이 돼서는, 법무부에 들어가 보니까 교정이든지 출입국이든지 범죄 예방이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큼니다. 검찰

이 과거 권한을 너무 오용·남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국민적 뜻을 받아 갖고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선언했고 그 결과로 검사의 수사권을 최종 박탈하는, 즉 검사는 이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고 10월 2일 날 그걸 출범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로써 검찰개혁의 한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최근에 와서 보완수사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부 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적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가 법사위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 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기타 다른,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 갖고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해 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천문학적 숫자이기 때문에 저도 헛갈렸는데 1400조 아니에요? 장관께서도 그걸 말씀하시고……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추가해 주세요.

○박지원 위원 그런데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희생을 해야 돼요, 더 큰 희생을. 그런데 장관은 보완수사권 문제만 하더라도 중수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수청·공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 장관하고 늘 얘기해서 그 얘기는 알아요, 충정은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뭐……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왜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부터 대통령과 함께 해 왔습니다. 거의 39년 이상을 늘 가깝게 지내면서 또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 왔고 늘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 왔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이미 큰 틀의 결론은 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개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새로운 입장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행히도 국회에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도 또 피해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또 충분히 많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잘 이렇게 완료되리라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지역구 가니까 정성호 장관이 꼭 계셔야 된대요. 해외 노동자에 대해서 목포 사무소 승격도 해 주고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현장으로 출장 와서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높이 평가하고 있으니까…… 건강은 제가 보니까 괜찮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매우 안 좋습니다, 사실은.

○박지원 위원 잘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박지원 위원님의 진단에 따라 건강은 공소청 출범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그리고 또 약자를 위한 법무부장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윤상현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윤상현 위원 장관님, 사퇴 의사를 접으신 게 아니네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제가……

○윤상현 위원 결국 대통령이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건강상의 이유 등등 해서 사퇴하겠다. 대통령이 오시면 반드시 사퇴 의사 전하겠다고 하는 게 입장이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통령께서 해외 출장 중이신데 제가 그런 말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말씀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말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윤상현 위원 그러나 좀 전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말 속에……

○법무부장관 정성호 장관의 거취라고 하는 것은 장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정부 안에서 저의 책임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 발언하신 거 보면, 어떻게 할 일이 없습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박지원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최측근이시고 또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이시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최고의 운명 공동체인데 산더미 같은 일이 남아 있는데 왜 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또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 의지 없는 게 결국은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거 하고 어떤 무력감을 토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말씀드린 대로 이미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은 저는 상당 정도 완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검찰은 이제 수사 개시할 수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권한을 갖고 검사들이 또다시 권한을 갖다가 또 오용·남용해 갖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지금 여당 안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많은 장치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저희 법무부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거에 대한 현재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말씀드린 대로……

○**윤상현 위원**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부에서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미 전 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전 총리는 말씀하셨지만 그게 전당대회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관님께서 평소에 발언하신 바에 의하면 이거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국회에다 떠넘긴 것은 일종의 무책임해 보인다, 오히려 직무유기 아니냐. 장관님께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오히려 국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냐. 대통령도 또 장관님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여서 만약에 날림 통과가 된다면 결국은 저는 이재명 정부의 몰락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 레임덕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봅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가 결국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몰락했습니까? 우리는 보통 대통령 탄핵으로 생각,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몰락은 이미 김무성 대표가 들어섰을 때, 그게 박근혜 대통령 재임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에 대해서 사무총장 임명도 제대로 못 하고 또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당에서는 계속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해 왔어요. 그게 결국은 레임덕의 시작이었는데 저는 이게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한번 과거의 선례를 보셔라. 그래서 장관님께서 대통령과 최측근이고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국민적인 토론을 하시고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토론회 같은 걸 통해서 여론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 권유드려서 당에 있는 분들도 나오시고 또 억울한 피해자분들 그리고 검찰, 경찰 또 법학 전문 교수들, 전문가들 해서 대국민 토론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게 결국, 장관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이런 절차는 반드시 통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통령께 건의도, 당 지도부도 설득을 해서 국민적인 토론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최근에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가 61입니다. 찬성은 23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폐지 반대가 46입니다. 폐지 찬성이 39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의 세, 더블 가까이 반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번 더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국민의 대표 아니시겠습니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야당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 복귀하셔서 갖고 전체회의가 열리고 추후 소위도 열리지 않겠습니까? 또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국민적 우려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여야 위원님들께서,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충분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윤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김남희 위원**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면 반드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범죄 피해자들이 국회에 오셔서 형사소송법 개정해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일부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발언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제가 느꼈던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막막함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계속 증거를 찾아야 했고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했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제가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도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수사기관이 내 얘기를 믿어 주지도 진지하게 들어 주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사건은 검찰의 재수사 요구 후 송치되었고 보완수사를 통해서 유죄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만약 그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피해자들 중 과연 몇 명이나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다음은 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발언입니다.

‘피해자 이의 신청권 보장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피해자로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다들 하시겠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피해자가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검찰이 보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 신청이라고 하면 국민들은 간단하게 그냥 이의 있습니다 하면 될 것 같지만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차근차근 따져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는 법조인들이 많으시니까 쉬운 일로 보이시겠지만 저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의 발언입니다.

‘강간 사건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직장 내에서 불송치 결정을 알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나는 이제 떴듯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이걸 듣고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혼자에게 ‘누가 나를 믿어 주겠느냐’ 얘기를, 마지막 대화를 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안심하는 절차가 있었거나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이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절

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던 자료를 모두 수집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있다가 구속이 됐고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장관님,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 들어 보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많은 피해자단체에서 저희 법무부에도 직접 방문을 하셔서 가지고 여러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법무부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경찰이 부실하게 처리하거나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걸러 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계속 있었습니다. 제도 설계에서 이런 사례들의 교훈을 담아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보완수사권 폐지된다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론으로, 적어도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진건송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했고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 두고 경찰의 수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대안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고민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에 저희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범위에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특히 불송치되거나 하는 이런 사건 중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들, 사기라든가 또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수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사건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걸러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들의 그런 노력은 제가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범위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위원장 서영교** 오늘은 1분 하는 것을 박지원 대표님만 하시고 전부 다 시간 내에 끝내면 좋겠습니다. 저희만 있을 때는 1분 추가를 했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남희 위원** 그러면 마이크 빼고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성은 검찰개혁이 실제로 국민들을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얼마나 지켜내느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결국 문제를 낳습니다. 저는 국민의 피해가 경찰이나 검찰의 판단 하나로 억울하게 묻히지 않도록 재검토하는 통로를 반드시 열어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개혁 과정에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보완책 계속 논의해서 더 좋은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하나 질문할게요, 법무부장관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선임해 줍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은 본인에게 바로 경찰 단계에서 고지해 주고……

○**위원장 서영교** 사회적 약자,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노인학대 그리고 강력범죄, 살인사건까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아까 김남희 위원님 말씀처럼 ‘변호사, 범조인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약자에 대한 범죄 그리고 강력범죄까지 변호사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송치 사건인 경우에는 거기까지만 국선변호사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대화를 장관님과 나눴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의신청 단계 그리고 또 송치 단계까지 의무적으로 변호인이 활동해 주고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안 처리 과정에서 꼭 반영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희망하시는 위원님들 좀 더 있으십니까? 아까 이쪽은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용민 위원님 그리고 손술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아까 김승원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분 두 분씩 서로 교차해서 대체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규택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박규택 위원** 장관님, 오늘 언론에 온통 장관님 사의 표명했다는 기사들만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났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봤습니다.

○**박규택 위원** 보면 지금 정성호 장관께서 더 할 일 없다는데, 사의를 표명했는데 청와대는 공식 표명 아니다, 진화했다는 기사도 있고요. ‘정성호 사의에도 이 침묵’,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한다. ‘여권, 결국 전대 때문이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지금 여론에서 보는 시각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당의 전당대회,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문에 합리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결국에는 전당대회 이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책임을 지고 계시는 법무부장관은 그에 반대하니까 사의 표명을 했는데 청와대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지금 다 이런 기초라는 말

이지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 대다수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것은 반대하는 숫자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장관님, 여론조사 나온 결과 그것 보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사실 보완수사 문제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게 국민들의 삶에 정말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문제는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인식을 법 개정에서 가장 반영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래서 장관님 입장이시라면 그런 국민들의 여론 같은 것을 고려해서 가지고 법무부장관으로서 좀 더 책임 있게 여당 국회의원도 설득을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여당의 전당대회 필요성 때문에 일방적으로 폐지로 결론 난다 하면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가 법무부장관 자리 아닌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당대회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공소청·중수청 설립이 의결됐을 때 그 당시에 형사소송법도 같이 진행되는 게 사실은 올바른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고 하면서 좀 뒤로 미뤄졌습니다. 미루면서 만약 저나 정치권, 여당 쪽에서 이것을 전당대회와 관련지어서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곽규택 위원** 전당대회용이 아니라면, 그러면 국민 여론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여전히 필요하다 그 여론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여론을 법무부장관으로서 법 개정에서 반영하거나 또는 대통령께 부당한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시는 대로 총리실에서 검찰개혁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또 최종 결론이 매우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다른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곽규택 위원** 장관님께서 건강 문제까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취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게 참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장관님으로서의 어떤 소신이 있고 또 본인이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면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청와대,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신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 오셔서 가지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또 여야 위원님들 간에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보완수사라고 하는 게 보완수사가 있고 보완수사요구가 있는데 사실 지금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건에 있어서는 보완수사요구를 먼저 합니다, 경찰에.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그런 보완수사요구가 잘 안 되는 경우 또 보완수사요구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에 검사가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번 광주 여고생 피살사건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처음부터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 경찰에서는 미루기 수사, 감추기 수사, 부실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변호사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법무부장관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사건 지연 문제라든가 부실 수사 문제 또 사건의 암장 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저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또 여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가지고 지금 우려하시는 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소위에서 형사소송법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약자의 권리, 피해자의 권리를 넣고 또 경찰이 암장하거나 폭주하는 경우에 대한 장치도 만들고 그러나 여기서 부족한 것은 검사가 폭주하거나 암장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장관께 의견을 물어봤지 위원장님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니, 그동안 논의에 안 오셔서 그 논의가 있다는 말씀을……

○**곽규택 위원** 다 알고 있어요, 그 논의는.

○**위원장 서영교** 다 알고 계시지요?

○**곽규택 위원** 다 알아요.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의 문항이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때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때, 잘못됐을 때……

○**곽규택 위원** 그러면 수사가 부족하니까 보완수사를 하는 거지, 수사가 충분한데 보완수사하라고 하는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럴 때는 질문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론이 많이 내고 있으니까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 식으로 왜곡하면 안 돼요, 여론조사를.

○**김승원 위원**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곽규택 위원** 제가 예의를 안 지킨 게 뭐 있습니까?

○**김승원 위원** 목소리를 내고 그래요?

○**곽규택 위원** 지금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지적을 해야지.

○**위원장 서영교** 이 부분 왜곡해서 나온 부분은 한 번씩 체크해 나가구요.

곽규택 위원님 대체토론했고 다음은 이성운, 김민전, 김용민, 김태규, 박은정, 주진우, 손술, 박형수, 김승원 이렇게 지금 신청하셔서 순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사이에 신청하고자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최대한 제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다음 여러분들의 논의를 위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대체토론하시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장관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장관님의 사퇴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도 검찰개혁 이외에 굉장히 많은 법무행정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 오셨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한편 제가 검찰개혁 관련해서 하나만 장관님께 말씀을 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안이 있어요. 정부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거기에는 보완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라고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도 정해졌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겠다, 대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다양한 제도들을 더 보강하겠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법사위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것과는 별도로 검찰안이 별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안은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그리고 국회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계속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검찰개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보여 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 이라고 봅니다. 개혁의 대상인 행정공무원들이 정부가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국회의 입장을, 여당이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거기에다 대고 입법을, 발의한 법에 대해 쓰레기법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이런 것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찰 내부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보완수사 관련해서는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도 피해자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경청해야지요. 그런데 피해자의 의견들을 보면 피해자의 권리가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호되어야 된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그 이면에는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아야 된다 이것이 전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양한 제도들을 고민하고 설계할 수 있는 것이지 검사가 직접 수사·보완수사를 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피해자의 헌법상의 권리 보장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은 저희가 입법 과정에서 법무부와 함께 잘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처장님, 헌법 12조 3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 규정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당연히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다시 말해서 지금 검찰개혁에서 형사소송법 우리가 논의하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입법재량인 것이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위헌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현재는 계속 밝혀 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헌법에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맞습니다. 특히나 12조 3항을 읽어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독점적으로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이유가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전제로 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을 나눈 거잖아요. 수사하는 사람이 영장청구권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수사하지 않는 쪽에 영장청구권을 줘서 한 번 더 걸러 봐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법정의견에서 거기까지 판단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사건이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12조 3항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하면 되겠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법정의견의 입장입니다.

○김용민 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민전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세요.

○김민전 위원 김민전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났는데요.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하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요. 감회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국민의 참정권이 이렇게 전혀 예기치 못하게 침해된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민전 위원 좋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의 비난은 선관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마는 선관위의 조직은 법원이 사실상 선관위의 머리고 선관위의 사무처는 손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파선관위만 해도 동부지원 수석부장판사가 송파선거구 위원장이 아닙니까? 사실상 법원이 머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사태는

법원에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헌법상 법원과 선관위는 분명히 분리돼 있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김민전 위원** 별개의 기관이지만 중앙선관위의 위원장도 대법관이시고 각급 선관위원회 위원장도 다 지방법원 원장들이시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면 머리는 숨어 있어서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송파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시켰습니다. 사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법적 소송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상황이고 법관이 위원장이신데 이것을 마음대로 폐기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투표함의 폐기였다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전 위원**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관들이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파구의 올림픽공원에서도 최근에 현장점검 결과에 나왔습니다마는 약 4만 표가 투표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배분을 안 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본다고 하면 법관이 위원장이시니까 법원이 상당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원은 선관위 업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민전 위원** 법원은 하지 않지만 법관이 하지요. 그리고 그 법관들은 주로 각 지방법원의 원장들이 각급 위원장들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숨으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현재 선거소청이 진행되는데요. 선거라는 게 과연 뭔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입니다.

○**김민전 위원** 셀프 거버넌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 스스로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선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선거소청을 국민께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모르는데 어떻게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선거소청에 관련된 업무는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김민전 위원** 지금 재검표 진행되고 있는 것 그러면 얘기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역시 선거소송이라면 법원의 심리 대상이지만 선거소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사이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 분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을 거라고……

○**김민전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합의기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위원장의 영향은 아주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위원장은 판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선거가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라고 한다면 법원도 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법원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판사들이 위원장으로서 어디 해외여행 가시고 수당 더 받으시고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수원지법에서 사실 국민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만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요. 투표율을 조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투표율을 조작한 직원들의 메신저에 대한 영장도 발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낙담할 수밖에 없었고 법원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또 수원지방법원장이 경기도선관위 위원장이시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투표율에 조작이 있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은.....

○**김민전 위원** 그런 면에서 저는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한 공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전주을 출신 이성윤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니까 힘을 내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힘을 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성윤 위원** 저는 장관님의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장관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 검찰개혁에 직면할 때마다 검찰이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지요. 그러면 밑에 있는 고위직 검사들이 줄지어 사직서를 내지요. 사퇴 쇼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들은 이프로스에 뭐 이런저런 얘기 시끄럽게 막 만들지요. 그러면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니 뭘 하고, 하여튼 법꾸라지처럼 온갖 법 기술로 현란하게 이렇게 검찰개혁에 반대합니다.

저는 만일 이번에도 총장직무대행부터 시작해서 검찰 고위직이 이런 일을 하고 또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면 장관님께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검찰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게 검찰의 직접수사권·인지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검찰개혁이 있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사실상 거의 분리된 겁니다. 일부 조금 남아 있는 문제인데, 공소청·중수청이 설립되는 법안이 통과돼서도 검찰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많은 검사들이 이것은 국민적인 여론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데 수긍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일부 여러 가지 조금 작은 것은 있었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그런 계획에 동참한다는 게 큰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장관님, 이제 하실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을 다시 챙기시고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국회에 일임하고 국회의 결정에 따라서 장관님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검찰에 있는 수사인력, 직접수사인력 검사 2200명 그리고 수사관 6000명 정도 인력을 어떻게든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검찰에서도 공소청 준비단이 있고 또 행안부에서 중수청 준비단이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도 이미 지난해부터는 거의 인지수사가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의 인지부서에서도 공소유지만 하고 있거든요.

○**이성윤 위원** 그 말씀은 그 수사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래서 저도 어쨌든 최대한 전에 직접수사와 관련했던, 인지수사와 관련했던 부서들은 전원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방향은 맞는데 지금 10월 2일 날, 69일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인사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예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제가 법사위 때도 장관님께 요청을 했지만 그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행안부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것은 신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권을 없앤다 이게 아니고요. 검찰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을 남겨 두면 안 됩니다. 저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거나 또는 검찰에 어떤 수사권을 남겨 둔다는 것은 바로 수사인력을 남겨 두었다가 사정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인력을 직접수사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 검찰이 수사권의 씨앗이라도 남겨서 남겨서, 나중에 결국 옛날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의 ‘등’ 자로 수사권을 많이 확대했던 것처럼 이 조직에 수사인력을 남겨 놓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그 인력을 빨리 확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10월 2일 날 제대로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게 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수사인력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보완수사권만 폐지한다? 이것은 믿을 수가 없고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검찰에서 큰 업무들을 맡아 보셔서 알겠지만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보완수사요구를 하든 재수사요구를 하든 또 그다음에 공판이 또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필요한 지원 인력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될 건지를 세밀히 논의하고 있고.

다만 저는 분명히 검찰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검찰 안에서 유능한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성운 위원**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의 수사인력을 줄여야 되고요. 다시 수사권을 부활할 수 있는 수사인력, 남겨 뒀서는 안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운 위원님.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행정처장님, 아마 처장님도 새로 오셨을 것 같고 저도 새로 와서 서로 데뷔전이라서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지방에서 부장판사 할 때 선관위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구선관위원장을 했었는데 선거 관련해서 제가 무슨 내용을 알겠습니까? 말 그대로 얘기하면 그냥 바지사장이라는 속된 표현이 가장 정확할 건데, 그 부분은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대부분 실질적인 선거에 대한 업무를 전혀 모르고 지금 다들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고받고 결재서류 도장 찍어 주고 이 역할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각 선관위원장들의……

○**김태규 위원** 솔직히 얘기하시면 저도 경험해 봐서 알고, 법원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모든 선관위원장들이 다 그렇다고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대체적으로 그런 것은 맞으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관장이 그 지경이면 선거관리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되시겠지요. 그렇지요?

배제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런……

○**김태규 위원** 그래서 지금 법관들을 선거관리업무에서, 선거관리위원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에 대해서 처장님 의중은 어떠신지……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입법정책적 사항이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그게 모범 답안이기는 한데 아마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없었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으실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런데 선관위도 중앙선관위가 있고 또 시도 선관위가 있고 시군구 선관위가 있는데 시군구 선관위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또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법관이 관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바지사장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놔두는 게 맞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사무처장입니다.

○**김태규 위원** 직무감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직무감찰 부분, 그렇지요? 그것 헌법재판소에서 직무감찰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지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전까지는 논의가 좀 있었지요? 그게 해석론이 갈렸었지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만약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직무감찰을 해석을 통해서 감사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그래서 감사원에서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이루어졌으면 혹시라도 이번 같은 사태가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더 감시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규 위원**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

○**김태규 위원** 답을 못 하시네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

○**김태규 위원** 법무부장관님, 검찰청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은데 검찰청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요. 제가 검사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제도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떤 면에서 필요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검찰·검사 제도가 만들어진 역사적 연원이……

○**김태규 위원** 제가 시간이 좀 짧아서 정리를, 질문이 많아서 제가 짧게, 제가 아직 요청 부족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제가 느낀 것은 검찰·검사 제도도 필요 없고 그리고 검찰청을 없애는 게 선의고 그다음에 기소·수사 분리하는 게 당연히 개혁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전제 자체가 전부 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런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보완수사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검찰에 수사권을 전부 다 되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예 언급도 안 되고 보완수사권조차도 마치 얘기하는 게 무슨 최악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보완수사권, 나아가서 수사권은 검사가 반드시 가지면 안 되는, 제도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어느 나라도 이것은 채택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제도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찰의 수사에 관련된 권한은 여러 견해가 있는데 다만 과거 우리 검찰이 수사권·기소권 이런 것들을 과용해 가지고 한 그런 것들의 상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잘됐다는 논하기 이전에 과거에 검찰의 행태가 그러했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도 개혁을 논할 때 어느 기관을 악으로 두고, 악마로 규정짓고 그러고 나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그 제도 개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선악,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까, 시간이 짧아서.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하시고 주진우 위원님, 손솔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법무부장관님, 사의 표명 언제 하셨는지를 여쭙봐도 될까요? 그전, 훨씬 전이라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사실 여러 달 전부터 이미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하기로 되어 있고 하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들만 남은 거고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최근에, 최근도 아니지요. 한 상당 전에 전 총리께서 정부의 입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크게 제가 할 일은 대충 끝난 것 아닌가, 그다음에 법무부 안에서 또 제가 추진하려고 했던 교정이나 출입국이나 범정에 관련된 정착들, 제도 개혁들을 대부분 해 났기 때문에 이제 그만둬야겠다는 얘기를 사실 여러 번 했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한참 전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불거진 게 조금 의아스럽다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것은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관님께서 사의를 표명하신 부분, 그 날짜가 훨씬 전이었는데 지금 이게 불거진 이유가 뭐냐 하면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 언론에 땀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것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명분을 주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언론에서 지금 이것을 계속 부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는 필요하지요, 장관님. 당

연하지 않습니까? 수사라는 것이 한 번에 다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보완수사는 필요합니다. 다만 보완수사를 누가 하게 할 것인가, 국민들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고 아마도 지난번 꺾림의 여론조사는 그런 취지의 국민들의 답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사의 수사권 남용이 너무나 문제가 돼서 내란까지 저지른 검찰 권력을 개혁하는데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것 제가 여쭙볼 게 있는데 어제 채널A 보도로 ‘민주당 당원 신천지 유입설’ 이게 보도가 됐는데 ‘경기도 지역의 수십 명이 민주당 당원으로 신천지 신도가 가입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고 지금 이것이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십 명, 몇 명 가입한 게 민주당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리면서 검찰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언론에 나갔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에서 저는 챙겨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사권 폐지 국면과 맞물리면서 마치…… 합수본에서 지금 이게 수사를 마쳤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과 발표만 남은 상황에서 경기도 지역의 수십 명의 신천지 신도가 민주당에 가입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마치 민주당과 신천지를 연관시키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려는 검찰의 검언 유착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챙겨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범죄피해자가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상정된 의사일정 7항에 있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 참여권 관련해서도요……

법원행정처장님께도 여쭙보고 싶습니다.

현행법이 지금 피해자가 공판절차에 참여하는 규정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으로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 진행, 공판절차 진행에 있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피해자 의견진술권뿐만이 아니라 증거라든가 양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이 검찰 개혁의 일환이었고요.

지금 범죄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검찰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말씀하셔서 이 법이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이 법안에 담겼으면 좋겠고요.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형사절차에 범죄피해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오세훈 서울시장 최근에 정치자금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론이 났는데요. 이것이 6·3·3 원칙에 따라서 내년 1월 말에 선고가 끝납니다. 확정이 되면 보결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재판소원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신청되면 보결선거 국면에서 2월 말까지는 이 재판소원이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 정성호 장관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힘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 본다’ 이렇게 직접 소신을 밝히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면 이왕 결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때 보완수사권 폐지로 서민이 더 피해 본다는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보완수사권이 유지됐을 때 유지된 보완수사권을 근거로 해서 검찰이 다시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어쨌든 좀 바뀌었을 때……

○주진우 위원 소신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입장 변화가 있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쨌든 보완수사 유지, 폐지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 검찰 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소홀함이 없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면 기존에는 보완수사권 존치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 듯한 발언이 있다가 김민석 전 총리가 총리를 그만두면서 갑자기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확 틀었다는 느낌을 국민들도 받고 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의 치안이랑 민생보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구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완수사권 존치를 보고했을 때 보완수사권 존치가 어느 정도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면 폐지가 국민의 치안이나 민생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대통령께 따로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총리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주진우 위원 아니, 중요 보고니까 직접 총리가 보고를 하든 장관이 보고를 하든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공소청, 중수청 설립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큰 악들, 범죄 대응 역량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주진우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지금 간단한 질문이에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찬성하느냐, 장관은 찬성하느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장황한 설명이 뒤로 붙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부의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주진우 위원** 결정이 됐으니까 따른다고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이번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느끼고 있어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관도 사의 표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까 민주당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7대 범죄, 검찰에 부분 송치한다는 것, 저는 대책으로서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치하는 범위 늘려야 됩니까, 아니면 현행 민주당 당론이 옳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과연 그게 적절한 범위인지를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가지고 정말 빈틈이 없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주진우 위원** 이게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등은요 전체 범죄 비율에서 엄청나게 적은 비율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범죄의 제명에 대해서만 피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훨씬 피해자가 많은 것은요 보이스피싱, 다단계 같은 전문 사기 범행, 이런 사건일수록 복잡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중피해사건 외에도 정치인 뇌물받은 것, 마약사건, 간첩사건, 이런 것들 왜 검찰에서 못 들여다보게 합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부분적으로 뇌물·마약·간첩 이런 사건들을 빼고 송치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에서 이해충돌에 가까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다중피해사건이나 전문적인 범행일수록 보완수사권 존치가 저는 필요하다는 견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봐 주시겠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견해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들, 보이스피싱이든지 다단계 사기사건이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여야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진우 위원** 국민들께서 직관적으로 아신 거예요.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강간 살인마의 사건인데 현재 그 사건을 견제하는 세력이 있고 제도가 있는데도 경찰이 버젓이 지금 증거를 직접 인멸하고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이 그와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 보도가 되는 판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나면 거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아예 감독을 포기하고 방기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님도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경찰과 검찰,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국가 전체의 수사기관들이 상호 간에 충분히 견제되고 서로 통제될 수 있게, 그를 통해서 국민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축소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주셔서 가지고 국민들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려 보겠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를 검사가 보완수사 안 하면 수사가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떤 범죄든 마찬가지지요, 그거야.

○위원장 서영교 아니,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를 안 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피해자가 따로따로 돼 있었을 때, 피해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경찰서별로 다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에 있어서 이걸 개별적으로 보면 거기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잘 안 보였을 때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게 되면 ‘아, 이게 사기구나’ 하는 경우가 밝혀지는 게 예상 외로 많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보이스피싱은 사기입니다. 따로따로 봐도 사기고 모아서 봐도 사기입니다. 어떻게 보이스피싱이 모아서 봐야 사기가 되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말씀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정성호 장관이 설명하지 않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데 그 하나로 봤을 때는 사기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지금 전체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1, 피해자가 있고 범죄자가 있으면 경찰이 수사합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이게 범죄 문제가 있으면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검사가 이것을 기소해서 재판으로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걸 기소하기에 부족하면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해라, 지금 이것은 검사가 자기 수사관을 통해서 직접 하던 수사를 경찰을 통해서,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수사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 사건이 가야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서영교 이 범죄를 수사 안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제도는 이 안에 약자의 이야기, 약자의 권리 그리고 혹시나 놓쳤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또 송치돼서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넣어 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보완수사를 안 하면 범죄자를 수사를 안 합니까? 기본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송치해서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그게 재판에 넘어갔을 때 법원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법원에서 또 증거를 요구하고 이런 절차가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손솔 위원님.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의사진행발언은 오늘은 좀 놓고, 우선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실 때 하시지요.

○박형수 위원 그걸 마음대로 합니까? 지금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요,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한다고요.

○위원장 서영교 아니……

○주진우 위원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좀 아프십니까?

○김승원 위원 진행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박형수 위원 우리는 의사진행발언을 할 권리가 있어요.

○위원장 서영교 그래도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곽규택 위원** 무슨 왜곡을 해요? 그러면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왜곡입니까?

○**박형수 위원** 뭘 왜곡을 해요?

○**위원장 서영교** 왜곡에……

○**곽규택 위원** 그걸 왜 본인이,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판단을 해요?

○**위원장 서영교** 제가 법무부장관이 왜곡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곽규택 위원**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김승원 위원** 회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것을 마치 수사가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형수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뭘니까?

○**손솔 위원** 저 대체토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 토론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게 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토론 들으시지요. 좀 들읍시다.

○**위원장 서영교** 오늘은 의사진행발언 없이 가는 것으로 하고요.

○**박형수 위원** 그걸 위원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다음에 말씀하실 때쯤 해서 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이 적절하지 못하면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손솔 위원** 저도 오래 기다렸거든요. 토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좀 이따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고요.

다음은 손솔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손솔 위원** 장관님, 지난 전체회의 때 저희가 국민의힘 최영중 시의원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후에 또 보고받으시거나 살펴신 게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담당했던 검사 또 그 지휘라인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여러 말씀들을 하셔서 가지고 저희 내부적인 조사까지도 대충 마쳤습니다.

○**손솔 위원** 저희가 저번 전체회의 전 오전에 가서 뵈고 왔고 전체회의를 하는 중에 청주지검에서 브리핑을 했고, 다녀와서 한 이틀간 경찰 쪽에도 확인해 보고 상호 크로스 체크를 해 보는데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설명을 다 하지 않음으로써 저희에게 설명을 좀 부실하게 하신 게 있거든요, 청주지검에서.

특히나 저는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최영중 전 시의원이 벌인 범죄의 심각성이 대단히 중대한데 아직 구속이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경찰의 여러 보고 문건으로 피해자에게 접촉하려는 정황도 확인이 됐는데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되어서 지금 최영중 시의원이 구속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방할 때, 특히 기자간담회에서 차장검사님이 말하는 방식은 ‘경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평풍이 되는 것을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검사든 경찰이든 아동에 대한 성매수, 이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한 번 더 당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가 저희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고요. 경찰에서도 신속하게 영장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슬 위원**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고 분노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동에 대해서 성매수를 하고 의제강간의 혐의를 받는 자가 공천까지 받아서 시의원 당선까지 된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손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정부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손슬 위원** 12월 3일도 그렇고 4월 4일 윤석열 탄핵까지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도 달려오고 여의도로도 달려오고 한남동으로도 달려와서 내란을 진압하고 정권교체도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란을 진압하는 응원봉 그리고 ‘키세스’라고 불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기소가 벌어지고 벌금이 나오고, 한남동에 달려갔던 교사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나와서 내일모레 전북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내란 청산 과정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집행 거부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이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으로 입건돼 가지고 처벌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를 아주 최근에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상황 파악을 지시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검찰이 할 수 있는 조치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슬 위원** 벌금이 나온 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 접수를 받아 본다거나 이런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한번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슬 위원** 특히나 7월 28일에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사에 대해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월 3일부터 1월 6일 그때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서 구속되지 않겠다고, 체포되지 않겠다고 한참 난리를 치던 그때예요. 그때 한남동에 시민들이 달려와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란을 벌인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교사가 품위유지를 위반했다 이렇게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 저는 사실 일련의 내란 청산에 나섰던 국민들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을 범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헌정 유린 사태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나서겠냐, 이재명 정부가 이런 시민들의 행동으로 탄생한 정부라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꼼꼼히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손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간사님 대체토론하시면서 의사진행발언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3분을 준다고요?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린다고요.

○박형수 위원 1분?

○위원장 서영교 예.

○박형수 위원 아이고, 박하시네.

○위원장 서영교 말씀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1분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의사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주관적인 개입이 많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또는 장관이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본인이 얘기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모든 의사진행에 다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물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그것은 정식으로 5분 시간 내에서 신청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회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기 위해 관여하는 그 정도가 허용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처럼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얘기하고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성호 장관님, 보완수사권 기능이 뭐니까? 보완수사권 왜 필요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1차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결돼 있는지 안 됐는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증거가 수집돼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저는 보완수사권의 가장 큰 목적은 인권 보장적 기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은 삼심을 하잖아요. 내가 억울한 것이 있으면 항소해서 다룰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상고까지 해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피해자건 피의자건 피고인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경찰이 1차 수사한 것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있을 때는 검찰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라라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였어요. 그래서 과거에 경찰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의 하나가 ‘검사한테 가서 얘기해라’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처음 수사 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건 피의자 입장에서건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걸러 줄 수 있는 그게 보완수사권입니다. 2차적인 수사권이지요. 이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는 것을 전면 폐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몇 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도 발의했고 다른 의원님도 발의했어요. 여기에 의견진술 기회, 사실 확인, 조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보완수사를 폐지해 버리니까 그 공백이 생기니까 이걸로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확인, 의견 조회, 면담 이것과 임의수사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임의수사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임의수사는 가능하도록 하고 강제수사는 못 하도록 하자’ 이렇게라도

하든지, 이것은 보완수사를 아예 못 하게 한다고 해 놓고 이런 방식으로 임의수사 방식을 열어 놓는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이렇게 큰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권 보장적 기능을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또 국민의 대다수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 이상이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 폐지하자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2배 3배 많은 분들이 존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범죄피해자들, 장운기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경찰이 살인마의 편에 서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똑같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고 도대체 누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까?

장관님, 장관으로서의 정무적인 판단을 떠나서 한 법률가로서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보완수사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폐지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러한 우려들을 고려해 가지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 부분도 저는 장관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들이 논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논의하지요. 그런데 주무부 장관인 법무부장관이 자기 의견이 있어야지요. ‘여당·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다’ 그게 주무부 장관으로서의 태도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부의 입장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폐지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폐지했을 때 우려되는, 폐지하는 그 자체만 봐서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해 가지고 보완수사 폐지의 원칙은 관철 하면서 보완해 달라는 겁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사회적 약자 몇 개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주진우 위원이 적절히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범죄들에서 이런 문제가 항상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에는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사회적 약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회적 약자의 범죄피해는 더 보호를 해야 되지만 범죄로 피해를 보는 모든 사람들 다 피해자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부에 대해서만 허용해 주겠다 그렇게 선택적으로 범죄를 보면 안 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

○**박형수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관님 건강이 나빠졌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게 율화병이 돼 가지고 건강이 나빠지신 것 같아요. 솔직히 장관님 마음속에는 그게 막 쌓여 있을 겁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그게 화가 쌓여 가지고 병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무부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과로한 탓도 있고요.

○**박형수 위원** 이게 과로지요, 이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 얼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박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박형수 간사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입니다, 국회법.

○**박형수 위원** 또 정리합니까? 정리하지 말라니까.

○**위원장 서영교** 아니, 이것을 오늘 정리해야 합니다. 간사와 위원장의 위상은 달라요.

국회법 제49조(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국민들께 다시 한번 보고도 드릴 겸 위원들께 말씀드리는데요. ‘국회법 4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국회법 제49조, 위원장이 왜 위원장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무슨 의사 정리가 필요하고 무슨 질서 유지가 필요했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제가 한번……

여기서 보완수사는 왜 보완수사인가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지요?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고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게 확정되었고 그래서 경찰이 1차 종결하고 검사에게 송치를 합니다. 검사는 이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기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소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할 때 보완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사소송법에 없는 보완수사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공소장법에 검사의 수사는 삭제되어 있고요.

검사가 하던 수사는 어디로 갑니까,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차적으로는 경찰이 합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와 관련해서는 중수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맞습니다. 검사가 하던 중대범죄, 7개의 중대범죄입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나 수사관 역할을 하던 사람들, 일 잘하는 경찰 등이 모여서 또 하나의 수사기관을 만들게 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그 중요한 수사들은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수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완수사는 기소를 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것이고 검사가 하는 보완수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경찰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저 경찰 못 믿겠어’라고 할 때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기관을 달리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 제도는 수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사는 제대로 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전

체……

그리고 검사가 하던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 장난치지 말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지 말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자라고 해서 10월 2일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같이 출범한다, 이 법안은 벌써 2월에 통과되었다, 이 법안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형사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독점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똑같이 또 그러시네.

○**위원장 서영교** 아니, 오늘 국민의힘은 들어오셨고요. 저희는 벌써 아주 여러 차례 논의를 해 왔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 뭘 상관이에요. 위원장님 하는 말은……

○**곽규택 위원** 그것하고 뭘 상관이에요? 그러면 말씀 그만하시면 되겠네,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위원장 서영교**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1분 포함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여기 소송 절차를 위원장님만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몇 번이나 설명하는 거요?

○**위원장 서영교** 국민들께……

○**김승원 위원** 간사님, 일단은 여기서 발언을 하시려면 위원장님께 허가를 얻고 발언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원칙도 계속 어기시면서 위원장님 발언에 끼어드는 것도 사실은 적법한……

○**곽규택 위원** 그것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도 발언할 때 끼어들잖아요.

○**김승원 위원** 제가 말하는데 또 끼어드십니다. 예전에 같이 할 때는 그것은 안 하기로 서로 약속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박형수 위원** 서로 그렇게 했는데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야. 위원장이 적절하게 의사진행을 해야지.

○**위원장 서영교** 가서 위원장의 역할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오시고요. 저는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고요.

○**곽규택 위원** 관리만 하세요, 다른 사람 말하는데 토달지 마시고.

○**위원장 서영교** 의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저도 6년째 법사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회의의 정리 정돈이고 오히려……

○**곽규택 위원** 의견 정리가 아니라 의사 정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의견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이.

○**위원장 서영교** 가만히 계세요.

○**김승원 위원** 또 그러시네. 좀 그러지 마세요.

○**곽규택 위원** 발언 시작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왜 시간이 6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5분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승원 위원** 그러지 마세요. 아니, 회의 끝나고 위원장님께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화를 내야……

○**곽규택 위원** 이게 의사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사진행인 거예요, 시간을 몇 번이나 주는 게!

○**위원장 서영교** 시끄러워요.

○**김승원 위원** 끝나고 나서 조용히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의사를 제대로 진행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위원장 서영교** 의사를 저만큼 잘 진행하겠습니까?

○**김승원 위원** 장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가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고 보완수사권이 있는 현재 형사사법 체계하에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 A회사에서 근무했다가 B회사로 이직한 직장인에 대해서 A회사의 사장이 영업비밀 침해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갖고 나간 게 없으니까 무혐의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 보완수사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1년씩 2년씩 끔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쪽의 회사 측 변호사가 사건 종결시키지 말고 조금 지연시켜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1년씩 2년씩 끔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소인이 B회사를 못 다니고 결국은 사표를 내고 무직으로 살거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사안도 있고.

두 번째는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3명을 구속해야 되는데, 3명이 공동정범이고 구속을 해야 불법수익을 환수할 수가 있는데 예컨대 2명에 대해서만 영장 청구하고 1명은 봐 줍니다. 그 1명이 나중에 그 2명에 대해서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불법수익을 1명이 관리하고 나중에 형사절차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나눠 갖습니다. 2명만 청구해 달라고 하는 변호사 선임을 합니다. 누가요? 돈이 있는 사람이, 불법수익을 가진 사람들, 강자들이.

마지막으로는 추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70억, 80억 추정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검찰에 추정하지 말아 달라고, 이것 계산하기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추정 선고하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법수익 환수 못 하지요. 두 번째는 가석방이 용이롭습니다, 추정이 없으면.

그런 등등의 불합리한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원칙은…… 권한이 있는 곳에 그런 오남용의 유혹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검찰은 7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권, 인지수사권, 행형이면 행형,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이것이 완전히 문화가 돼 버렸습니다, 조직문화가.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해도 반성을 안 해요.

이번에 청주지검 사건, 13세 미만 여자 아이에 대한 그토록 반인륜적인 범죄가 저질러졌는데도 통신영장 기각한 것 그다음에 압수수색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 반환시킨 것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오히려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그런데 뭐가 부실합니까? 압수수색영장 제대로 청구를 했고 혹시 미진한 것

있으면 경찰한테 전화해서 거기다 그냥 수기로 넣어서 도장 팡 찍어서 청구하면 되는 일을…… 통신내역 기각을 한 사례가, 그 경찰관도 자기 처음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조직문화처럼 되어 있어요.

수사를 왜곡해도 잘못해도 왜곡하고 남용한 그 검사들 지금 옷 벗고 변호사 하면서 오히려 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쨌건 지적을 받으면 자기네 식구도 구속시키고 잘못됐다 그러고 이번에 행안부장관께서 4중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야말로 검찰의 이런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그런 불합리가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서영교 위원장님과 민주당 범여권 법사위원님들이 그 보완책을 만들어서, 예컨대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은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응원하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지켜봐 주시고.

경찰 수사가 문제가 되면 범죄별 수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수사를 꼼꼼하게 했는지도 체크하도록 하는 그런 것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은닉하거나 혹은 누락시킬 수 있으니 모든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 간접사실 또 간접증거와 양형까지 포함해서 다 전자화시켜서 데이터센터에 보관시켜 놓으면 언제든지 그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고 또 사후 검증을 통해서 누구의 잘못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시간 순서대로 짚 하면 지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까지 검증이 되고요. 시간 순서대로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수사 자료, 증거, 양형까지 다 담아 두면 장난 못 칩니다. 특히나 법왜곡죄가 있는데 누가 변호사가 꼬신다고 해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못 칩니다. 그런 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사실은 법무부장관님, 중수청 또 행안부장관님이 꼼꼼하게 챙기시고 작동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수사·기소 분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보타지, 태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꼼꼼하게 체크하고 보완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대로 국민의 생명·재산 또 인권보호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어떤 권력도 독점하게 되면 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 권한 또 형의 집행권까지 독점하면서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현재 검찰개혁 국면에 도달이 된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권력도 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늘 불신해야 됩니다. 잘할 거라는 신뢰보다는 잘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들이 면밀히 보면서 그런 게 잘못 운영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원칙은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마는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피의자도 마찬가지로. 피의자든 피해자든 실제적 진실을 발견해 가지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인권보호고 또 정의실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빈틈이 없게 많이 고민들을 해 주시고.

다만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수사에 관련된 전권은 이제 경찰이나 중수청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법외범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법외범죄로 입건할 수 있는 권한도 전적으로 이제는 경찰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수사의 독점권을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게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그런 면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세밀하게 설계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경찰이 수사를 하잖아요. 금방 말씀처럼 수사의 전권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수사하고 나면 기소는 누가 하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견제되는 것이지요. 검사는 수사권도 기소권도 영장청구권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제하고 나뉜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처럼 경찰이 그 안에서 부패하거나 폭주하거나 그리고 암장하는 일이 없게 저희가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뭐니까, 이게 바로 검찰관 장윤기 사건 아닙니까? 이 범인은, 이 범죄자는 아동 성착취입니다. 아동법 위반은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입니다. 이 사람은 국힘당 전 시의원입니다. 이 사람을 공천한 사람은 김진모 국힘당 당협위원장입니다. 국힘당 장윤기 사건입니다. 이 사람의 통신내역을 경찰이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통신내역을 기각했습니다, 통신영장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찰은 만약에 이렇게 잘못했다면 바로 체포됩니다. 국가수사본부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사가—그냥 상식적으로 말입니다—이 성착취, 아동 성착취 범죄자에 대해서 통신내역을 기각했어요. 누가 견제해 주지요? 그나마 저희들이 지적하고 법무부장관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협위원장, 상대 여성이 의도가 있다는 등 미성년자라는 등 황당무계한 발언을 하는데요. 이 당협위원장과 청주시청의 차장검사는 남부지검에서 같이 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 그들이 무슨 관계가 있건 없건 간에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구속영장이 거부당했어요. 이런 자가 세상을 지금 돌아다녀요. 피해 아동 쪽에 전화 안 할까요? 안 할까요? 검사가 이렇게 해서 통신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는데, 거부했는데 이게 뭐니까, 도대체? 왜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는 겁니까? 검찰은 왜 이것에 대해서, 대검은 왜 반성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손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직접 갔더니 우리에게 거짓말만 늘어 놓더라고

요. 제가 지검장에게 찾아가면, 지청장에게 찾아가면 ‘아, 의원님 저희가 이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민 정서에 맞지도 않고 잘못됐는데 빨리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경찰이 영장이 부족하고’…… 우리 법무부장관님 다 체크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거짓말을 늘어 놓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지검장도, 차장도, 검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 사람들은 자기 식구 감싸기구나.

이런 일이 그동안 이재명에게 있었고 서영교요? 서영교 검찰의 수사받았어요. 1심·2심·3심 뚫뚫 말려들여서 대법까지 가서 무죄 받았습니다. 그때 공안 부장검사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예요. 저는 온갖 것 다 팔려 본 사람입니다.

○**곽규택 위원** 개인적 복수를 하고 계시는 거구만, 그러니까.

○**위원장 서영교** 이것을 보고 저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학의, 김학의는 누가 덮었습니다? 경찰이 덮었습니다? 검사가 덮었습니다? 한동훈 처남은 누가 덮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4년 동안 보안 유지하라며 재판에 넣어 놓고 뚫뚫 말아서 했던 그 사람들 4년 만에 다 무죄 받았습니다. 누가 한 짓입니까? 증거를 조작한, ‘재창이 형’이 ‘실장님’으로 변했다는 것을 국정조사에 나와서 다 이야기됐어요. 검사들한테,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 거지요?

박상용 검사는 전화하잖아요. 그게 제 목소리입니까, 박상용의 목소리지?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이게 도대체……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검사들 이게 한 해 두 해입니까? 이 국힘판 장윤기 사건, 검찰판 장윤기 사건 누군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형사소송법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안에 없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고 경찰이 수사하고 그것을 보완수사요구로 보완하고 그리고 기소권으로, 영장청구권으로 검사가 견제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영장을 다 기각했는데 빨리 하루하루 증거가 사라져 갑니다. 만 12세 아동에 대한 성착취입니다. 이것을 왜 언론들은 안 쓰지요?

○**곽규택 위원** 물타기인 걸 아니까 안 쓰는 거예요.

○**위원장 서영교** 이걸 왜 국민의힘은 사죄하지 않지요? 최영중이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도 또다시 물타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태완이법을 만들고 구하라법을 만들고 사랑이법을 만들어 온 약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람입니다. 저는, 약자들은 우리가 함께 해 줘야 되는 거고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강자들은 온갖 변호사와 검사 아니면 다른 내용을 써서 다 빠져나갑니다. 아마 적당히 합의 봤다고 하면서 적당히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게 법무부장관님이 관리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검사들과 어쨌든 다른 외부 인사들과 유착관계 문제는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미 또 공수처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에 응당한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사건 자체는 지금 검찰 지휘부나 경찰 지휘부 간에 긴밀히 협력하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여기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그리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이려고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2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민전 김승원 김용민 김태규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박형수 서영교 손솔 윤상현 이성윤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노경필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나경원	김민전	국민의힘	2026. 7. 23.
송석준	김태규		
신동욱	박형수		
조배숙	주진우		

○의안 회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1.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9)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1.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7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1.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7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7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1.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8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1.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85)

이상 6건 7월 22일 회부됨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2. 이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2.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2.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4)

이상 3건 7월 23일 회부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3.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3.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3.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3.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3.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3)

이상 5건 7월 24일 회부됨